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36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과 「지방세징수법」(제정)으로 분법 시행('17.3.28.)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8조)

나. 부과 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동차 무관할 등록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분법 시행('17.3.28.)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 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를 「지방세기본법」 의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7조)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4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부칙으로,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
 - 개정대상(6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종합의견은 「지방세기본법」 분법 시행('17.3.28.)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 구세에 있어서 운영상 실무적인 내용에는 조례 개정 전과 동일함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

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37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과 「지방세징수법」(제정)으로 분법 시행('17.3.28.)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나. 「지방세징수법」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분법 시행('17.3.28.)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 및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전부 제정조례안임.
- 주요 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 관허사업의 제한(안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4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종합의견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시행('17.3.28.)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 구세에 있어서 운영상 실질적인 내용에는 조례 제정 전과 동일함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